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459호

2019년 2월 01일

금요일

|        |       |
|--------|-------|
| 선<br>람 | 기관의 장 |
|        |       |

## 공 고

|             |              |                                                     |     |
|-------------|--------------|-----------------------------------------------------|-----|
| ○ 공         | 고 제2019-213호 | 공시송달공고                                              | 2   |
| ○ 공         | 고 제2019-218호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 5   |
| ○ 공         | 고 제2019-219호 | 남동구립도서관 주말단시간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 8   |
| ○ 공         | 고 제2019-223호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 행사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9   |
| ○ 공         | 고 제2019-234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입법예고                     | 11  |
| ○ 공         | 고 제2019-236호 | 보상계획 열람공고                                           | 39  |
| ○ 공         | 고 제2019-240호 | 2019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안전 시행계획 공고                        | 41  |
| ○ 공         | 고 제2019-244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2  |
| ○ 공         | 고 제2019-245호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소래3 오수중계펌프장】사업 실시계획 공고·열람               | 62  |
| ○ 공         | 고 제2019-246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3  |
| ○ 공         | 고 제2019-249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9  |
| ○ 공         | 고 제2019-251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94  |
| ○ 공         | 고 제2019-252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01 |
| ○ 공         | 고 제2019-264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107 |
| ○ 공         | 고 제2019-269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119 |
| ○ 공         | 고 제2019-270호 | 2019년 2월 취득세 공시송달                                   | 137 |
| ○ 보 건 소 공 고 | 제2019-16호    |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 139 |
| ○ 보 건 소 공 고 | 제2019-17호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 140 |

## 고 시

|     |             |                                       |     |
|-----|-------------|---------------------------------------|-----|
| ○ 고 | 시 제2019-16호 | 도시관리계획(소래어시장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39 |
| ○ 고 | 시 제2019-17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구역 조정 결정 고시               | 140 |
| ○ 고 | 시 제2019-18호 |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 148 |
| ○ 고 | 시 제2019-19호 | 도로명주소 고시                              | 151 |

|        |  |  |  |  |  |  |  |  |
|--------|--|--|--|--|--|--|--|--|
| 회<br>람 |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213호

**공시송달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고잔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9년 1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공고장소 : 남동구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 공고기간 : 2019년 1월 28일 ~ 2월 12일(15일간)
-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 기타사항

1. 공고기간 내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032-453-61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확정예정조서

○ 고잔2지구

| 번호 | 종전토지 |     |        |          |       | 확정토지 |     |        |          |         | 면적증감  |       | 소유자                  |                                                | 비고    |
|----|------|-----|--------|----------|-------|------|-----|--------|----------|---------|-------|-------|----------------------|------------------------------------------------|-------|
|    | 읍·면  | 동·리 | 지번     | 지목       | 면적(㎡) | 읍·면  | 동·리 | 지번     | 지목       | 면적(㎡)   | 증가(㎡) | 감소(㎡) | 성명                   | 주소                                             |       |
| 1  |      | 고잔동 | 306-1  | 대        | 205   |      | 고잔동 | 306-1  | 대        | 215.8   | 10.8  | 0     | 김*숙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88번길 ** (고잔동)                   | 폐분부재  |
| 2  |      | 고잔동 | 306-10 | 답        | 3     |      | 고잔동 | 306-10 | 답        | 3.0     | 0     | 0     | 김*숙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88번길 ** (고잔동)                   | 폐분부재  |
| 3  |      | 고잔동 | 382-1  | 묘지       | 6,559 |      | 고잔동 | 382-1  | 묘지       | 6,559.0 | 0     | 0     | 김*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697번길 **, *동 ***호 (고잔동)          | 수취인불명 |
| 4  |      | 고잔동 | 364-2  | 도로       | 5     |      | 고잔동 | 364-2  | 도로       | 5.0     | 0     | 0     | 백*분<br>백*용           |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당동 64-156<br>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77      | 주소불명  |
| 5  |      | 고잔동 | 364-8  | 도로       | 1     |      | 고잔동 | 364-8  | 도로       | 1.0     | 0     | 0     | 백*분<br>백*용           |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당동 64-156<br>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77      | 주소불명  |
| 6  |      | 고잔동 | 209-3  | 도로       | 16    |      | 고잔동 | 209-3  | 도로       | 16.0    | 0     | 0     | 손*목                  |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101 (화평동)                        | 주소불명  |
| 7  |      | 고잔동 | 305-4  | 공장<br>용지 | 331   |      | 고잔동 | 305-4  | 공장<br>용지 | 331.0   | 0     | 0     | 임*화                  |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 ****동 ****호 (상동, ****아파트)     | 수취인불명 |
| 8  |      | 고잔동 | 213-6  | 전        | 344   |      | 고잔동 | 213-6  | 전        | 344.0   | 0     | 0     | 오*수                  |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60번길 **, 나동 ***호 (만수동, **빌라)      | 폐분부재  |
| 9  |      | 고잔동 | 320-2  | 대        | 618   |      | 고잔동 | 320-2  | 대        | 618.0   | 0     | 0     | 오*석                  |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 *동 ***호 (연수동, **아파트)       | 폐분부재  |
| 10 |      | 고잔동 | 310-3  | 도로       | 23    |      | 고잔동 | 310-3  | 도로       | 23.0    | 0     | 0     | 오*섭                  | 339                                            | 주소불명  |
| 11 |      | 고잔동 | 310-5  | 도로       | 15    |      | 고잔동 | 310-5  | 도로       | 15.0    | 0     | 0     | 오*섭                  | 339                                            | 주소불명  |
| 12 |      | 고잔동 | 310-7  | 도로       | 1     |      | 고잔동 | 310-7  | 도로       | 1.0     | 0     | 0     | 오*섭                  | 339                                            | 주소불명  |
| 13 |      | 고잔동 | 213-2  | 도로       | 26    |      | 고잔동 | 213-2  | 도로       | 26.0    | 0     | 0     | 오*봉                  | 339                                            | 주소불명  |
| 14 |      | 고잔동 | 213-3  | 도로       | 116   |      | 고잔동 | 213-3  | 도로       | 116.0   | 0     | 0     | 오*봉                  | 339                                            | 주소불명  |
| 15 |      | 고잔동 | 211-2  | 도로       | 16    |      | 고잔동 | 211-2  | 도로       | 16.0    | 0     | 0     | 오*성                  | 212                                            | 주소불명  |
| 16 |      | 고잔동 | 325    | 대        | 469   |      | 고잔동 | 325    | 대        | 469.0   | 0     | 0     | 조*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697번길 **.* (고잔동)                 | 폐분부재  |
| 17 |      | 고잔동 | 365-8  | 도로       | 4     |      | 고잔동 | 365-8  | 도로       | 4.0     | 0     | 0     | 주식<br>회사<br>한**<br>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697번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고잔동) | 수취인불명 |

■ 지적재조사사업무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                |  |  |  |                |  |  |
|-----|----------------|--|--|--|----------------|--|--|
| 제출인 | 성명<br>(기관·단체명) |  |  |  | 생년월일<br>(등록번호) |  |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토지의<br>표시 | 종전 토지 |     |    |    |           | 확정예정 토지 |     |    |    |           | 증감<br>면적<br>(㎡) | 비고 |
|           | 읍·면   | 동·리 | 지번 | 지목 | 면적<br>(㎡) | 읍·면     | 동·리 | 지번 | 지목 | 면적<br>(㎡) |                 |    |
|           |       |     |    |    |           |         |     |    |    |           |                 |    |

|          |  |
|----------|--|
| 의견<br>내용 |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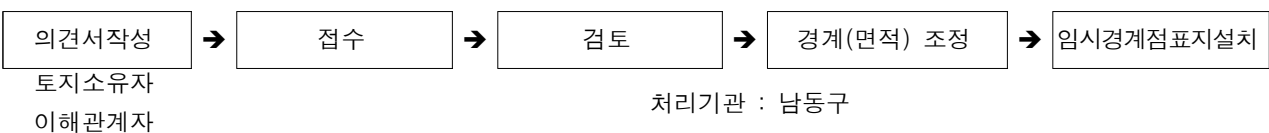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218호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이동안내문을 발송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하나 소유주 미상으로 발송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01월 28일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9.01.28. ~ 2019.02.11.
3. 공고대상 : 등록번호판 없는 이륜차 3대
4. 공고내용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이동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 소유자 미상 자동차(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대상

|                  |                                                                                                                             |                                                                                                                                                                                                                                               |
|------------------|-----------------------------------------------------------------------------------------------------------------------------|-----------------------------------------------------------------------------------------------------------------------------------------------------------------------------------------------------------------------------------------------|
| 관<br>리<br>변<br>호 | 2019-43(3대)<br>2019-01-23 3:13:46 P.M.<b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3대)</li> <li>○ 소 유 자 : 미상</li> <li>○ 현장확인일 : 2019.01.23.</li> <li>○ 견인일 : 2019.02.11. 이후</li> <li>○ 보관장소 : 견인예정</li> <li>○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186<br/>간석4동행정복지센터 1층 주차장</li> </ul> |
|                  |                                                                                                                             | 이하여백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유주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내역

| 연<br>번 | 접수번호       | 차량등록번호    | 차명      | 수취인명 | 주소 | 발송일자 | 미배달사유      | 방치장소                                     | 견인(예정)일        | 보관장소 | 비고 |
|--------|------------|-----------|---------|------|----|------|------------|------------------------------------------|----------------|------|----|
| 1      | 2019-00043 | 번호판없음(3대) | 승용<br>차 | 미상   | 미상 | 미발송  | 소유주 미<br>상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186 간석3동 행정복지센터 1<br>층 주차장 | 2019.02.11. 이후 | 견인예정 |    |

##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219호

## 남동구립도서관 주말단시간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립(서창)도서관 주말단시간근로자 공개채용에 따른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1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1. 최종합격자 명단

| 직 종               | 근무장소                    | 근무분야               | 응시<br>번호 | 성 명 | 비고 |
|-------------------|-------------------------|--------------------|----------|-----|----|
| 주 말<br>단시간<br>근로자 | 남동구<br>평생교육과<br>(서창도서관) | - 자료실 운영보조<br>(야간) | 서창-2     | 모○정 |    |

### 2.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가. 제출일시 : 2019. 01. 30(수) 14:00

나. 제출장소 : 남동구청 평생교육과(남동복지관 3층)

다.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일반용), 기본증명서 각 1부

라. 문 의 : 남동구청 평생교육과(☎ 453-6431)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223호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남동구 관내에 무단방치 된 차량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강제처리 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게시판, 시·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1월 29일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기 간 : 2019.01.29. ~ 2019.02.12.
2.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19.01.12. 이후
3. 강제처리(폐차) 장소 : 남동구 관허 폐차장
4. 이해관계인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나7233 외 4대
5.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무단방치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저당권자, 압류권자)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종료까지 권리행사가 없을 시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할 예정입니다.

6. 기타사항: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7. 문 의 처: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무단방치담당(☎ 032-453-2822)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대상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내역

| 접수<br>번호   | 차량등<br>등록번호 | 차명           | 차<br>종 | 방치장소                                   | 소유주          | 생년<br>월일 | 사용본거지                                       | 구분 | 채권자/촉탁기관/단속부<br>서                         | 등록일자       | 저당가액/<br>공문번호/<br>단속공무원 | 주소                       |
|------------|-------------|--------------|--------|----------------------------------------|--------------|----------|---------------------------------------------|----|-------------------------------------------|------------|-------------------------|--------------------------|
| 2018-00425 | ****나7233   | EF쏘나타 LPG    | 승용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1지구 현대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 신*수 외1 (신*철) | 23**     | 전라북도 정읍시 향*길 ***(상*동)                       | 저당 | 현대캐피탈(주) *저당을<br>부번호 : 4514-2000-000225   | 2000.03.31 | 5,000,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번지 4호  |
| 2018-00432 | **모2516     | 카니발 II       | 승용차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91 (논현동 423-2) 인천폐차장 앞 | (*)월*종*물*    | 12**     | 인천광역시 동구 방*로**번길 **, 산*용*유*선*3*/3*7(송*동)    | 저당 | 현대캐피탈(주) *저당을<br>부번호 : 2814-2004-001021   | 2004.12.06 | 6,000,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번지 21호 |
| 2018-00435 | ****노6870   | 마티즈          | 승용차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90-1번지 앞 주차구역          | 김*호          | 64**     | 충청남도 아산시 탕*면 동*로 ***                        | 저당 | 국민신용카드(주) *저당<br>을부번호 : 4102-2002-005521  | 2002.07.08 | 7,700,000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167번지      |
| 2018-00455 | **두4211     | 에쿠스 (EQ UUS) | 승용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166번길 27 범마을2단지 지하3번 주차장  | 신*섭          | 80**     | 세종특별자치시 새**로 **, 2**동 1*3호(새롬동, 새*마*아파트*단지) | 저당 |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저<br>당을부번호 : 2817-2012-008551 | 2012.08.24 | 5,600,00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292번지 3호   |
| 2018-00458 | **조8164     | BENZ C280    | 승용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166번길 27 범마을2단지 지하3번 주차장  | (*) 에*지*셋    | 1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로 **, 두*위*파*리*12**호(수송동)        | 저당 | 신한캐피탈(주) *저당을<br>부번호 : 4102-2011-001860   | 2011.02.25 | 4,800,000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0번지 1호 |

##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23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월 30일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상위법에 맞지 않은 과징금 및 과태료 사항 정비
- 중복되는 내용을 알기 쉽도록 간단히 명시

### 2. 주요내용

#### 가.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 자원봉사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대상 명시(안 제5조제4호)
  - 나목 :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해당 일
  - 다목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를 부착한 차량(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2년간 적용) : 1일 2시간 이내
- 상위법에 없는 과징금의 가산금 규정 삭제(안 제23조제3항)
  - 3항 : 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를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한다.
  - 24조 : 삭제

## 나.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 ○ 주차시설 설치비 보조대상에 대한 기준 명시(안 제2조, 별표1)

- 1호 :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경형 또는 일반형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 2호~4호 : 삭제
- 5호 : '96년 6월 8일'이전에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 별표 1

## 1) 내집안 주차장 보조금 지급

| 구 분                             | 지 원 금 액                |
|---------------------------------|------------------------|
| 대문· 담장 철거 후<br>주차장(직각, 평행) 설치 시 | 당해연도 지급기준액(매년 지급계획 수립) |
| 아파트내 추가 주차장 설치 시                |                        |

## 2) 부설주차장 개방 시설개선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시설지원내용                                                                                                                                                                                                                                                                                                                                                    | 지원금액                                   |
|------------------------|-----------------------------------------------------------------------------------------------------------------------------------------------------------------------------------------------------------------------------------------------------------------------------------------------------------------------------------------------------------|----------------------------------------|
| 주차 5면 이상<br>개방 가능한 건축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 노면표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구획, 안내 노면표시등</li> </ul> </li> <li>· Car Stopper 설치</li> <li>· 주차장 개방 안내 표지판</li> <li>· 부설주차장내 분리시설(웬스 등)</li> <li>· 주차장 포장 보수</li> <li>· 기타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 시설물 설치</li> <li>· CCTV 설치비용</li> <li>· 주차장 출입구 차단시설 설치</li> <li>· 기타 방법시설</li> </ul> | 설치비 100%<br>당해연도 지급기준액<br>(매년 지급계획 수립) |
| 의 무 개 방 기 간            | · 2년                                                                                                                                                                                                                                                                                                                                                      |                                        |
| 기 개방<br>건물에 대한<br>추가보조 | 보조받은 날로부터<br>2년이<br>지난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구획정비</li> <li>· Car Stopper설치</li> <li>· 주차장 포장 등의 시설보수 비용</li> </ul>                                                                                                                                                                                                               | 설치비 100%<br>당해연도 지급기준액<br>(매년 지급계획 수립) |
| 의 무 개 방 기 간            | · 2년                                                                                                                                                                                                                                                                                                                                                      |                                        |

## 3)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 비용 지원

| 구 분                                                                                      | 지 원 금 액               |
|------------------------------------------------------------------------------------------|-----------------------|
| 학교 및 공공기관                                                                                | 주차장 건설비용 100% 범위 내 지원 |
| <기타><br><input type="radio"/> 주차장 의무개방 20년 이상<br><input type="radio"/> 운영 및 관리 방식은 별도 협약 |                       |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교통행정과)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681, FAX 453-289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 4. 개정조례(안) : 별첨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년월일 : 2019년 1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 상위법에 맞지 않은 과징금 및 과태료 사항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내용을 알기 쉽도록 간단히 명시

☐ 주요내용

- 자원봉사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대상 명시 (안 제5조제4호)
- 상위법에 없는 과징금의 가산금 규정 삭제(안 제23조제3항)
-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규정 삭제(안 제24조)
- 주차장 보조금 지원 대상에 대하여 중복되는 각 호의 용어를 요약하여 명확하게 수정(안 제22조의2제1호)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주차장법」 제21조(보조 또는 용자)
- 「주차장법」 제21조의 2(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6항

## 남동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제2항에 따른”으로, “[별표 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 의한”을 “에 따라”로, “법 제8조의2 제1항”을 “법 제8조의2제1항”으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는 제1항의”로, “합산하여 부과한다”를 “더하여 부과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주차요금과 제2항의”로 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차요금 : 100 퍼센트 감면  
가. 모범납세자·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1년간

나.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해당 일

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를 부착한 차량(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다음연도부터 2년간 적용) : 1일 2시간 이내

제6조 중 “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별표 4]에 의한다”를 “별표 4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5]에 의하고”를 “별표 5에 따르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6]에 의한다”를 “별표 6에 따른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별표 4]”를 “별표 4”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1조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 제4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를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를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법에 의하되”를 “방법을 따르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별표 7]”을 “별표 7”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7조 중 “국토해양부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로, “국토해양부령”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의2 중 “주택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중 “영 제12조의5제2항”을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5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를 “비교표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6항의 단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를 “비교표에 따라”로,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를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단독 및 공동주택의”를 “대문이나”로, “주차시설”을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에 주차장”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 라목 중 “주차시설을”을 “주차장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민에게”를 “주민에게 무료로”로 한다.

제22조의4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별표 3]”을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붙여 징수한다”를 “발부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별표 11을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br>「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u>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u>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u>[별표 1]</u> 과 같이 한다.                                       |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br>-----<br>----- <u>제14조제2항에 따른</u> -----<br>-----<br>-----<br><u>별표 1</u> -----.                                                 |
| ②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u>규정에 의한</u>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u>법 제8조의2 제1항</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u>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100 퍼센트의 가산금을 <u>합산하여 부과한다.</u> | ② -----<br>----- <u>에 따라</u> -----<br>-----<br>----- <u>법 제8조의2제1항</u> -----<br>----- <u>자는 제1항의</u> -----<br>-----<br>-----<br>----- <u>더하여 부과한다.</u> |
| ③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의 <u>규정에 의한 주차요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u>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③ -----<br>----- <u>주차요금과 제2항의</u> -----<br>-----<br>-----<br>-----<br>-----.                                                                          |
|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                                                                                                       |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br>-----<br>-----<br>-----                                                                                                         |

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 3. (생략)

4. 모범납세자·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1년간 100퍼센트 감면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차요금 : 100 퍼센트 감면

가. 모범납세자·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인천광역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1년간

나.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해당 일

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를 부착한 차량

5. ~ 10. (생략)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 관리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4]에 의한다.

1. ~ 4. (생략)

②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5]에 의하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내용 등

(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다음연도부터 2년간 적용) : 1일 2시간 이내

5. ~ 10. (현행과 같음)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 -----  
-----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  
-----  
-----  
-----  
-----  
-----  
-----.

제8조(주차장의 표시) ① -----  
-----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  
-----

각 호

-----별표 4에 따른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  
-----  
-----별표 5에 따르고-----  
-----

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생략)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6]에 의한다.

제9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은 노상주차장 중에서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역을 위한 자동차외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별표 6에 따른다.

제9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  
-----  
-----  
-----.

② -----  
-----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  
-----  
-.

③ 제2항에 따라 -----  
-----  
-----별표 4-----  
-----  
-----  
-----.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② (생 략)

③ 그 밖의 공영주차장의 위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  
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  
· 감독) 구청장의 제10조의 규  
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  
도 · 감독한다.

제12조(노상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노상  
주차장은 도로의 너비 또는 교  
통상황 등을 참작하여 그 도로  
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운행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령 제4조제1항제  
3호 규정에 의거 너비 6m 미만  
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제12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  
차구획의 설치 · 운영) ① 국토  
해양부령 제6조의2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주택가 도로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필요 -----  
-----  
----- 따른다.

제11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  
· 감독) ----- 제10조에 따  
라 -----  
-----  
-----.

제12조(노상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  
-----  
-----  
-----  
-----  
-----  
-----.

②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  
항제3호에 따라 -----  
-----  
-----.

1. · 2.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  
차구획의 설치 · 운영) ① 시행  
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  
라 -----

인근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이하 "주거지전용 노상주차장"이라 한다) 설치시 주차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후 월단위, 분기단위, 반기별 또는 연단위로 주차 대상 차량을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거주지 전용주차구획에 무단주차 할 경우 그 차량에 대하여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조치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표 4의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에 준한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획에서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급지구분에 의한 4급지 해당요금을 적용한다.

-----  
-----  
-----  
-----  
-----  
-----  
-----  
-----  
-----  
-----  
-----  
-----  
-----  
-----  
-----  
-----.

② 제1항에 따라 -----  
-----  
-----  
-----  
-----  
-----  
-----  
-----.

③ 제1항에 따라 -----  
-----  
-----  
-----  
-----  
-----.

④ 제1항에 따라 -----  
-----  
-----  
-----  
-----.

제12조의3(주거지전용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거지전용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4급지 해당요금을 적용하되, 주차요금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가감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수하되, 금액은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징수한다.

1. ~ 6. (생략)

제13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③ (생략)

제15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7]**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원, 당해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

제12조의3(주거지전용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 **별표 1** -----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

1. ~ 6.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

----- **방법을 따르되**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

----- **별표 7** -----

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7조(주차장의 설치기준) 국토해양부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 제6조제4항에서 정한 시설로 하고, 주차장 총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제18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주택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기숙사는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

-----.

② -----

----- 시행규칙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주차장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

----- 시행규칙 -----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

1. · 2.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스텔의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의 3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2단식, 다단식에 한함) 주차대수의 2분의 1(소수점이하 버림)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른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2. (생략)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

-----  
-----  
-----  
-----.

제18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5제2항-----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 -----  
----- 따라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른」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의하여 감  
 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  
 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신청한다.

② 구청장은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용  
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8의 공영주  
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  
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로  
부터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금액  
을 별표 1의 급지부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요금으로 나누어  
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 비교표

에 따라 -----

----- 따라 -----

4. \_\_\_\_\_

----- 「한국은  
행법」 제86조에 따라 -----

② -----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

한다. 다만,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주차장일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유료 공영노외주차장의 급지 및 요금을 준용한다.

③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 2. (생략)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생략)

제22조의2(보조의 대상) 법 제21

-----,  
-----  
-----  
-----  
-----  
-----.

③ 법 제19조제6항의 단서에 따라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비교표에

따라 -----

-----  
-----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

-----  
-----  
-----.

4.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보조의 대상) 법 제21

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범위 내에  
서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영 제6조제1항 관련 부설주  
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외에 추가로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단독 및 공동주택의 담장  
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나. 단독 및 공동주택의 대문  
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다. 단독 및 공동주택의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자

라. 공동주택의 부지 내에 주  
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마. (생략)

-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  
여 필요한 시설변경·보안시  
설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조의2제6항에 따라 -----  
-----  
-----  
-----.

- -----  
-----  
-----  
-----  
가. 대문이나 -----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  
립주택에 주차장을 -----  
-----

<삭 제>

<삭 제>

라. 공동주택의 부지 내에 주  
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마. (현행과 같음)

- ----- 주민에게 무료로 -----  
-----  
-----

제22조의4(보조금의 반환)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원금과 보조금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법적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계산하여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보조금(이자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회수한다.

제23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생략)

③ 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를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붙여 징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가산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2조의4(보조금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  
-----  
-----.

③ ----- 어느 하나에 -----  
-----  
-----  
-----  
-----.

제23조(과징금 처분) ① -----  
----- 따른 -----  
----- 별표 3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발부한다.

④ ----- 따라 -----  
-----  
-----  
-----.

제24조(과태료처분) 법 제30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1]  
과 같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25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  
행에 -----  
-----.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년월일 : 2019년 01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현재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급기준은 인천시의 지침에 준하여 시행되고 있고, 시행규칙의 지급기준도 시 지침에 맞추어 변경 시마다 개정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에 별도의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필요함

☐ 주요내용

- 주차시설 설치비 보조대상 및 보조금 지급기준 변경(안 제2조, 별표1)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주차장법」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6항

## 남동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경형 또는 일반형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94년 12월 30일”을 “‘96년 6월 8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보조금의 지급기준(제4조 관련)

## 1) 내집안 주차장 보조금 지급

| 구 분                             | 지 원 금 액                |
|---------------------------------|------------------------|
| 대문· 담장 철거 후<br>주차장(직각, 평행) 설치 시 | 당해연도 지급기준액(매년 지급계획 수립) |
| 아파트내 추가 주차장 설치 시                |                        |

## 2) 부설주차장 개방 시설개선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시설지원내용                                                                                                                                                                                                                                                                                                                                                    | 지원금액                                   |
|------------------------|-----------------------------------------------------------------------------------------------------------------------------------------------------------------------------------------------------------------------------------------------------------------------------------------------------------------------------------------------------------|----------------------------------------|
| 주차 5면 이상<br>개방 가능한 건축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 노면표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구획, 안내 노면표시등</li> </ul> </li> <li>· Car Stopper 설치</li> <li>· 주차장 개방 안내 표지판</li> <li>· 부설주차장내 분리시설(웬스 등)</li> <li>· 주차장 포장 보수</li> <li>· 기타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 시설물 설치</li> <li>· CCTV 설치비용</li> <li>· 주차장 출입구 차단시설 설치</li> <li>· 기타 방법시설</li> </ul> | 설치비 100%<br>당해연도 지급기준액<br>(매년 지급계획 수립) |
| 의 무 개 방 기 간            | · 2년                                                                                                                                                                                                                                                                                                                                                      |                                        |
| 기 개방<br>건물에 대한<br>추가보조 | 보조받은 날로부터<br>2년이<br>지난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구획정비</li> <li>· Car Stopper설치</li> <li>· 주차장 포장 등의 시설보수 비용</li> </ul>                                                                                                                                                                                                               | 설치비 100%<br>당해연도 지급기준액<br>(매년 지급계획 수립) |
| 의 무 개 방 기 간            | · 2년                                                                                                                                                                                                                                                                                                                                                      |                                        |

## 3)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 비용 지원

| 구 분                                                                                                   | 지 원 금 액               |
|-------------------------------------------------------------------------------------------------------|-----------------------|
| 학교 및 공공기관                                                                                             | 주차장 건설비용 100% 범위 내 지원 |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 의무개방 20년 이상</li> <li>○ 운영 및 관리 방식은 별도 협약</li> </ul> |                       |

#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 (보조대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u>각호의 1</u> 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로 한다. | 제2조 (보조대상) -----<br>-----<br>-----<br>-----<br>-----<br>----- <u>각 호의 어느 하나</u> -----<br>-----<br>-----. |
| 1.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u>평형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u><br>: 담장안 면적 2.3미터×6미터 이상의 공간(토지)을 확보한 <u>건물</u>                                                        | 1.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경형 또는 일반형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
| 2.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u>직각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u><br>: 담장안 면적 2.5미터×6미터 이상의 공간(토지)을 확보한 <u>건물</u>                                                        | <삭 제>                                                                                                    |
| 3. 대문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u>직각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u><br>: 대문안 면적 2.5미터×6미터 이상의 공간(토지)을 확보한 <u>건물</u>                                                        | <삭 제>                                                                                                    |
| 4.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 건물간 면적                                                                                              | <삭 제>                                                                                                    |

3미터×11미터 이상의 공간  
(토지)을 확보한 건물

5. '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  
 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이상의 공동주  
 택

6. (생략)

5. '96년 6월 8일 -----

-----

-----

-----

6. (현행과 같음)

## [참고자료]

## □ 주차장법

**제21조(보조 또는 용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를 알선할 수 있다.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⑥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236호

##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 광로3류7호선, 신월초등학교 육교 옆길 보행로 확장공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광로3류7호선)
  - 명 칭 : 신월초등학교 육교옆길 보행로 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
  - 신월초등학교 옆길 육교 인도확장 공사 (B=2.5m, L=82m)
4.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17-3번지 일원
5. 보상시기 : 2019. 7월(예정) ~
6. 보상금 지급처 : 남동구청 건설과
7. 보상대상
  - 토지보상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17-3 번지 일대 2필지
  - 지 장 물 : 도로개설 구간에 저축되는 지장물에 한함.
8.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고 개별로 협의체결 후 현금보상
9. 보상절차 : 보상에 필요한 서류 및 보상금액은 추후 개별 통지
10. 열람기간 : 2019. 1. 31. ~ 2019. 2. 22.
11. 기타사항
  -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 ② 토지조서 등은 남동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으신 분은 건설과에 문의(☎032-453-2712) 또는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용지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순번  | 토 지<br>소재지 | 지목 | 지적<br>면적<br>(㎡) | 편입<br>면적<br>(㎡) |     |     |    | 소 유 자 |              |
|-----|------------|----|-----------------|-----------------|-----|-----|----|-------|--------------|
|     |            |    |                 | 계               | 지구내 | 지구외 |    | 성명    | 주소           |
|     |            |    |                 |                 |     | 보상  | 동의 |       |              |
| 합 계 |            |    |                 | 595             |     |     |    |       |              |
| 1   | 618-4      | 도  | 5,602           | 460             | 460 |     |    | 인천광역시 |              |
| 2   | 617-3      | 전  | 2,169           | 128             |     | 65  | 63 | 김**   | 구월동 1281-*   |
| 3   | 618-1      | 전  | 144             | 7               |     | 1   | 6  | 이**   | 인천 중구 관동2가 * |

☐ 지장물 조서

| 일련번호 | 지 번   | 물건의 종류 | 구조 및<br>규격 | 수량   | 단위 | 소 유 자 |                        | 비 고 |
|------|-------|--------|------------|------|----|-------|------------------------|-----|
|      |       |        |            |      |    | 성 명   | 주 소                    |     |
| 1    | 617-3 | 돌쌓기    | 자연석        | 34.4 | ㎡  | 이**경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br>617-* |     |
| 2    |       | 관상수    | H=3.0m 이하  | 30   | 주  |       |                        |     |
| 3    | 618-1 | 펜스     | H=2.0m     | 20   | m  | 이**   | 인천광역시 중구 관동2가<br>*     |     |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240호

## 2019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안전시행계획 공고

「교통안전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2019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안전시행계획
2. 공고기간 : 2019. 1. 30 . ~ 2019. 2. 15.(14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가. 개 요

- 1) 계획기간 : 2019년도
- 2) 대 상 : 남동구 관내
- 3) 내 용 : 남동구 교통안전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나. 주요내용

- 1) 남동구의 교통여건
  - 2) 2018년 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분석
  - 3) 2018년 추진성과 및 실적
  - 4) 2019년 교통안전 시행계획
  - 5) 교통안전사업 투자계획
5. 열람 및 문의 : 남동구 교통행정과(☎032-453-2881)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24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1일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남동구 평생교육사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학력인정 문해교육
-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위원 추가 (안 제7조)
  -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그 밖에 평생교육·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
- 평생학습관 기능 관련 조항 추가 (안 제16조)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 평생학습축제 등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 사업
- 사업의 공동추진 조항 신설 (안 제26조)
  -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필요 사업 공동추진 근거 마련
- 학력인정 문해교육 조항 신설 (안 제27조~제29조)
  - 대상, 운영, 경비보조 및 지원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평생교육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45 평생교육과 / ☎ 453-6052, FAX 453-589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http://www.namdong.go.kr)/입법예고)

### 4. 참고사항

- 「평생교육법」
-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년월일 : 2019년 2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남동구 평생교육사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학력인정 문해교육
-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위원 추가 (안 제7조)
  -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그 밖에 평생교육·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
- 평생학습관 기능 관련 조항 추가 (안 제16조)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 평생학습축제 등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 사업
- 사업의 공동추진 조항 신설 (안 제26조)
  -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필요 사업 공동추진 근거 마련
- 학력인정 문해교육 조항 신설 (안 제27조~제29조)
  - 대상, 운영, 경비보조 및 지원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본 문 : “별 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첨”

## □ 참고사항

- 「평생교육법」 제5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21조3, 제39조

## 남동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동구민”을 “남동구”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생학습관”이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 진흥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개발 등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학력인정 문해교육”이란 성인 학습자가 교육감이 지정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학력인정기준 충족여부 심사를 거쳐 학력을 인정받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구민”으로, “평생교육도시”를 “평생학습도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생 교육 지원 정책”을 “평생교육진흥정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내 평생교육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중 “평생학습”을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평생교육에”를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에”로, “위하여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생교육 기관·단체”를 “평생교육기관·

단체”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을 “평생교육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4호) 중 “동”을 “평생학습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평생교육담당 국장
2.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3. 남동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4. 평생교육 전문가
5.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6.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7. 그 밖에 평생교육·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7조제4항 중 “평생교육업무담당부서의 장”을 “평생교육담당 부서장”으로, “평생교육업무담당”을 “평생교육담당”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1회”를 “한 차례”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 할”을 “해촉할”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회의는”을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무위원회”를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로, “협의·조정한다”를 “협의·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생교육업무담당”을 “평생교육담당”으로 한다.

제13조 중 “여비 를”을 “여비를”로 한다.

제14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평생교육”을 “평생교육 프로그램·장애인 평생교육”으로, “개발·보급”을 “개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인력관리 은행제 운영, 학습동아리의”를 “등 인력관리, 학습동아리”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교육 및 훈련”을 “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평생학습축제 등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 사업

제16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제1호 중 “운영”을 “개발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역”을  
“지역 학습공동체 조성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상담 등”을 “상담 및 의  
견 수렴 등”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유관기관·단체·공공시설·교육기관”을 “관계기관·단체·공  
공시설·교육기관”으로, “내에서”를 “안에서”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평생교육업무담당부서의 장”을 “평생교육담당 부서장”으  
로 한다.

제22조 중 “법 제28조”를 “구청장은 법 제28조”로,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자는 학습자에”를 “따라 학습자에게”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료증”을 “수료증 등”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관·단체는 구청장”을 “기관·단체 등은 구청장의”로, “시정  
하여야”를 “시정해야”로 한다.

제4장제26조를 제30조로 하고,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사업의 공동추진) 구청장은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동구를 관할하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4장의 제목 “보칙”을 “학력인정 문해교육”으로 한다.

제4장에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대상)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해득 능력이 필요한 남동구에 거주하는 성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국  
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28조(운영) 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정받은 학력인정 문해교육(이하 “문해교  
육”이라 한다)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문해교육 교육과정 연구 개발 및 프로그램 편성 운영
2. 문해교육 강사 및 시설 확보 및 관리
3. 문해교육 학습자 학적·평가 관리 및 상담
4.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학력인정 절차 수행 및 졸업장 수여
5. 그 밖에 문해교육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29조(경비보조 및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해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2.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3. 문해교육 강사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4. 그 밖에 문해교육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관련 경비

제4장제27조를 제31조로 한다.

제30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br>----- 남동구-----<br>-----<br>-----<br>-----<br>-----.                                                                                        |
|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br>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2조 (정의) -----<br>-----.<br>1. “평생학습관”이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 진흥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개발 등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 2. “평생교육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한 협                                     | <삭 제>                                                                                                                                                       |

의회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구청장이 평생교육 진흥 및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개발 등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4. (생 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전체의 경쟁력 향상 및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교육도시 건설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 교육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3. “학력인정 문해교육”이란 성인 학습자가 교육감이 지정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학력인정기준 충족여부 심사를 거쳐 학력을 인정받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 2. (현행 제4호와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 구민-----  
-----  
----- 평생학습도시  
-----.

② -----  
-----  
-----  
----- 평생교육 진흥정책-----  
-----.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내 평생교육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 실시를 적극 권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단체와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설치) ①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남동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는 평생교육 기관·단체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과 각종 공모사업의 심사·선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 평생교육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 및 평생교육 관련 단체·시설의 지원에 관한

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  
-----  
-----.

제5조(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에 -----  
----- 위하여 인천광역시 -----  
-----  
-----.

② ----- 평생교육기관·단체  
-----  
-----  
-----  
-----.

제6조(기능) -----  
-----  
-----.

1. 평생교육 사업 -----  
-----

<삭 제>

사항

3.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생략)

제7조(구성) ①·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국장,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담당 국·과장 중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평생교육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

4. (현행 제5호와 같음)

제7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평생교육담당 국장

2.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3. 남동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4. 평생교육 전문가

5.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6.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7. 그 밖에 평생교육·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  
----- 평생교육 담당 부서장-----  
평생교육담당-----.

제8조(임기) -----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  
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11조(회의 등) ① (생략)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의 기능 및 구  
성) 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실무  
책임자 중에서 협의회 의장이 위  
촉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위  
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  
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

----- 한 차례-----  
---. -----  
-----.

제10조(위원의 해촉) -----  
-----  
----- 해촉할 -----  
--.

1. ~ 4. (현행과 같음)

제11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  
-----  
-----.

제12조(실무위원회의 기능 및 구  
성)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무  
위원회--- 협의·조정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평생교육담당 -----  
-----  
-----  
-----.

제13조(수당 등) -----  
-----  
-----  
-----  
여비를 -----.

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6조(평생학습관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략)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 3.·4. (생략)
  5. 강사 및 자원봉사자 인력관리 은행제 운영, 학습동아리의 육성·지원
  6.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7.·8. (생략)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신설>

제17조(평생학습센터의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별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

제14조(운영세칙) -----  
-----  
필요-----  
-----.

제16조(평생학습관 기능) -----  
-----.

1. (현행과 같음)
2. 평생교육 프로그램·장애인 평생교육 -- 개발 --
- 3.·4. (현행과 같음)
5. ----- 등 인력관리, 학습동아리 -----  
---
6. ----- 교육·훈련
- 7.·8. (현행과 같음)
9. 평생학습축제 등 구민의 평생 학습 참여 활성화 사업
10.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평생학습센터의 기능) -----  
-----  
-----.

1. -----

육프로그램 운영

2. (생 략)

3. 지역 네트워크 구축

4. 지역주민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참여 활동 상담 등

제18조(평생학습관 등의 운영)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관내 유관기관·단체·공공시설·교육기관 및 기타 시설 등을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유자·관리자와 협의하여 평생학습 협력기관·시설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9조(운영요원 등) 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사 및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업무담당부서의 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22조(학습자 안전 보험가입) 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학습자에 발생한 생명상·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 개발 및 운영

2. (현행과 같음)

3. 지역 학습공동체 조성 및 --

4. -----  
----- 상담 및 의견 수렴 등

제18조(평생학습관 등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관계기관·단체·공공시설·교육기관 -----  
-----  
----- 안에서 -----  
-----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운영요원 등) ① -----  
-----  
-----  
-----.  
----- 평생교육담당 부서장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학습자 안전 보험가입) 구청장은 법 제28조-- 따라 학습자에게 -----  
-----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이나 공  
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3조(수료증 등 교부)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인정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  
수 수료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5조(지도·감독) ① (생 략)

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단  
체는 구청장 자료요구나 지도·  
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지  
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  
항이 있을 경우 구청장은 기관·  
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 제4장 보칙

<신 설>

-----  
-----.

제23조(수료증 등 교부) -----  
-----  
----- 수료증 등 -----  
-----  
-----.

제25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  
음)

② ----- 기관·단체  
등은 구청장의 -----  
-----  
시정해야 -----  
-----  
-----.

제26조(사업의 공동추진) 구청장은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동구  
를 관할하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필요한 사  
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4장 학력인정 문해교육

제27조(대상)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  
해득 능력이 필요한 남동구에 거

<신 설>

주하는 성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28조(운영) 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정받은 학력인정 문해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문해교육 교육과정 연구 개발 및 프로그램 편성 운영
2. 문해교육 강사 및 시설 확보 및 관리
3. 문해교육 학습자 학적·평가 관리 및 상담
4.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학력인정 절차 수행 및 졸업장 수여
5. 그 밖에 문해교육 사업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29조(경비보조 및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해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2.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3. 문해교육 강사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4. 그 밖에 문해교육 운영을 위하

제26조 (생 략)

제27조 (생 략)

<신 설>

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이나 활동 관련 경비

제30조 (현행 제26조와 같음)

제31조 (현행 제27조와 같음)

제5장 보칙

## [참고자료]

## □ 평생교육법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 ① 시·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시·군·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시·군·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 ④ 시·군·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1조의3(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245호

##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소래3 오수중계펌프장】 사업 실시계획 공고·열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소래3 오수중계펌프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작성 후 공고·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4, 453-298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년 2월 1일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104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소래3 오수중계펌프장)
  - 명 칭: 소래구역 오수관로 정비사업(1단계)
3. 사업규모: A=492m<sup>2</sup>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2020.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 지 소 재 지 |               |        | 지목 | 면적(㎡) |     | 소 유 자     |                  | 비고 |
|-----------|---------------|--------|----|-------|-----|-----------|------------------|----|
| 연 번       | 시군, 읍면, 리동    | 지 번    |    | 공부상   | 편입  | 성 명       | 주 소              |    |
| 총 계       |               |        |    | 492   | 492 |           |                  |    |
| 1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 66-104 | 잡  | 492   | 492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    |

7.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8. 열람 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장 소: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246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월 31일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신규임용자 등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와 연가당겨쓰기 도입 등 공무원 복무 관련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원들의 휴식있는 삶을 위한 연가사용 활성화 및 저출산 극복과 출산·육아부담 완화 추진을 위해 복무 조례 일부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유연근무제 실시 근거 마련(안 제13조 및 제14조제2항, 제3항)
-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및 연가일수 산정법 명확화(현행 제18조)
- 연가일수 공제 개선, 연가 당겨쓰기, 연가사용권장제 도입(안 제20조)
-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20조의4)
- 공가사유 확대 규정(현행 제22조)
- 배우자 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및 자녀돌봄휴가 확대사항과 부모휴가 및 공무원 채용시험 종사자 휴가 도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3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183, FAX 453-218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http://www.namdong.go.kr)/입법예고)

## 5.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년월일 : 2019년 1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 제안이유

- 신규임용자 등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연가당겨쓰기 도입 및 연가사용권장제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
- 배우자 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등을 확대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 도모
- 유연근무제 실시 근거 마련, 연가일수 부여 방식의 합리화, 연가일수공제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유연근무제 실시 근거 조항 신설(현행 제13조, 제14조)
-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및 연가일수 산정법 명확화(현행 제18조)
- 연가일수 공제 개선사항 마련(안 제20조)
- 연가 당겨쓰기 및 연가사용권장제 신설(안 제20조의2, 제20조의3)
- 공가 사유 확대 규정 신설(안 제22조)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불임치료술 휴가 명칭 개선, 모성보호시간 확대, 육아시간 확대, 자녀돌봄휴가 사유 확대, 공무원 채용시험 종사자 휴가 도입(안 제23조)

## □ 본 문 : “별첨”

##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남동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등은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를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로 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8조의 제목 “(연가일수)”를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별표 5에 따른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 재직기간         | 연가 일수 |
|--------------|-------|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    |
| 1년 이상 2년 미만  | 12    |
| 2년 이상 3년 미만  | 14    |
| 3년 이상 4년 미만  | 15    |
| 4년 이상 5년 미만  | 17    |
| 5년 이상 6년 미만  | 20    |
| 6년 이상        | 21    |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말하되”를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제18조제3항제2호 중 “제20조제4항에 의한”을 “제19조제4항에 따른”으로, “잔여 연가일수가”를 “연가일수가 남아”로 한다.

제19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를 “(연가일수의 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를 “일수·정직 일수·직위해제”로, “뺀다”를 “공제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frac{\text{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12\text{개월}} \times \text{해당 연도  
연가 일수}$$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 교육훈련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공제한다.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연가 당겨쓰기)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재직기간        |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br>최대 연가 일수 |
|-------------|----------------------------|
| 1년 미만       | 5                          |
| 1년 이상 2년 미만 | 6                          |
| 2년 이상 3년 미만 | 7                          |
| 3년 이상 4년 미만 | 8                          |
| 4년 이상       | 10                         |

제20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해 공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제19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제20조의4(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15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3조제5항, 제23조제7항,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다.

제2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제2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23조제1항 중 “별표3”을 “별표 4”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불임치료”를 “난임치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⑦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육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제23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만5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⑮ 공무원 채용시험(각종 자격증 시험 제외)에 시험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반일(0.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24조제1항”을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출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출산 | 배우자 | 10일 |
|----|-----|-----|

별표 6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휴가 기준(제20조의4 관련)

1.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요일, 공휴일 또는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를 한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나. 토요일, 공휴일 또는 정상근무일에 근무를 한 시간이 휴무하게 하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휴가일수 계산 등

가. 휴가일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다만, 휴가일수가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다. 휴가기간을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3. 연가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제7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 제4호나목에 따른 병가 중 연간 3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병가기간 중에 근무해야 할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

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4. 병가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2) 해당 공무원이 감염병에 걸려 출근 시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가목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이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3호다목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 5. 특별휴가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2시간(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나.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2시간(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6조(복장 및 복제 등) ①·②<br>(생략)<br>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 제6조(복장 및 복제 등) ①·②<br>(현행과 같음)<br>③ -----<br>-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
| 제13조(근무시간 등) ① ~ ③ (생략)<br><u>&lt;신 설&gt;</u>                             | 제13조(근무시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br>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
|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생략)<br><u>&lt;신 설&gt;</u>                               |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br>(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br>②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br>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 |
| <u>&lt;신 설&gt;</u>                                                        |                                                                                                                                                                                                             |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별표4에 따른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 재직기간        | 연가 일수 |
|-------------|-------|
| 3월 이상 6월 미만 | 3     |
| 6월 이상 1년 미만 | 6     |
| 1년 이상 2년 미만 | 9     |
| 2년 이상 3년 미만 | 12    |
| 3년 이상 4년 미만 | 14    |
| 4년 이상 5년 미만 | 17    |
| 5년 이상 6년 미만 | 20    |
| 6년 이상       | 21    |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

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8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별표5에 따른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 재직기간         | 연가 일수 |
|--------------|-------|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    |
| 1년 이상 2년 미만  | 12    |
| 2년 이상 3년 미만  | 14    |
| 3년 이상 4년 미만  | 15    |
| 4년 이상 5년 미만  | 17    |
| 5년 이상 6년 미만  | 20    |
| 6년 이상        | 21    |

② -----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

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며,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생략)

3. (생략)

③ (생략)

1. (생략)

2. 제20조제4항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④ (생략)

⑤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게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

직기간을 말하며-----  
-----  
-----.  
-----  
-----  
-----.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제4항-----  
-----  
-----  
-.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  
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  
조사에 한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  
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  
가 일수에서 뺀다. <단서 신  
설>

② 휴직(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  
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  
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  
한다)의 경우에는 연가 일수에  
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뺀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  
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  
림한다.

제20조(연가일수의 공제) ① ----  
-- 일수·정직 일수·직위해제 --  
-----  
-----  
-----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  
다.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  
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  
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  
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  
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  
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                                                                                                          |                                                                                                                                                                                                                                                                                                                                                                                                                                       |  |
|----------------------------------------------------------------------------------------------------------|---------------------------------------------------------------------------------------------------------------------------------------------------------------------------------------------------------------------------------------------------------------------------------------------------------------------------------------------------------------------------------------------------------------------------------------|--|
| <div> <div>해당 연도<br/>휴직기간(개월)</div> <div>×</div> <div>해당 연도<br/>연가<br/>일수</div> </div> <div>12(개월)</div> | <div> <div>해당 연도 중 사실상<br/>직무에 종사한<br/>기간(개월)</div> <div>×</div> <div>해당 연도<br/>연가<br/>일수</div> </div> <div>12개월</div>                                                                                                                                                                                                                                                                                                                |  |
| <div>&lt;신 설&gt;</div>                                                                                   | <div>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div> <div>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div> <div>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div> <div>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div> <div>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div> <div>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div> |  |

<신 설>

<신 설>

③ · ④ (생 략)

<신 설>

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공제한다.

⑥ · ⑦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20조의2(연가 당겨쓰기)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                        |
|------|------------------------|
| 재직기간 |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 |
|------|------------------------|

## &lt;신 설&gt;

|             | 수  |
|-------------|----|
| 1년 미만       |    |
| 1년 이상 2년 미만 | 5  |
| 2년 이상 3년 미만 | 6  |
| 3년 이상 4년 미만 | 7  |
| 4년 이상       | 8  |
|             | 10 |

## 제20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해 공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소속기관

<신 설>

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  
의 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  
를 통보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  
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  
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  
원에게 통보

제20조의4(시간선택제공무원 등  
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  
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  
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시간선  
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  
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  
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  
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15조제2항, 제18  
조제1항, 제23조제5항, 제23조  
제7항,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별  
표 6에 따른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  
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의 어

제22조(공가)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 10. (생략)

<신설>

제23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  
-----  
-----.

1. ~ 4. (현행과 같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  
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  
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  
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  
을 받을 때

6. ~ 10. (현행과 같음)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  
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  
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  
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  
----- 별표 4-----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난임치료 -----  
-----.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⑤ 임신 중인 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⑥ (생 략)

⑦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⑧ ~ ⑫ (생 략)

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얻을 수 있다.

-----  
-----.

⑤ ----- 여성공무원 -----  
-----  
-----  
-----  
-----.

⑥ (현행과 같음)

⑦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⑧ ~ ⑫ (현행과 같음)

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육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신 설>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  
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  
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⑭ 만 5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  
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부모휴  
가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⑮ 공무원 채용시험(각종 자격  
증 시험 제외)에 시험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은 시험 시행일로  
부터 1주일 이내에 반일(0.5일)  
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참고자료]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②**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2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 재직기간         | 연가 일수 |
|--------------|-------|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    |
| 1년 이상 2년 미만  | 12    |
| 2년 이상 3년 미만  | 14    |
| 3년 이상 4년 미만  | 15    |
| 4년 이상 5년 미만  | 17    |
| 5년 이상 6년 미만  | 20    |
| 6년 이상        | 21    |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

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① 결근 일수·정직 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frac{\text{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12\text{개월}} \times \text{해당 연도 연가 일수}$$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공제한다.

**제7조의3(연가 당겨쓰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재직기간        |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br>최대 연가 일수 |
|-------------|----------------------------|
| 1년 미만       | 5                          |
| 1년 이상 2년 미만 | 6                          |
| 2년 이상 3년 미만 | 7                          |
| 3년 이상 4년 미만 | 8                          |
| 4년 이상       | 10                         |

**제7조의4(연가 사용의 권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해 공지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제7조의5(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7조의6(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⑦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제7조의8(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7조의6제6항·제7항 및 제7조의7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다.

##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9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 ①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행정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거나 목에 걸어야 한다. 다만, 제복을 입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 행정기관 내에서의 공무원증 패용 여부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 (특별휴가) ⑨ 만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24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월 31일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보호관찰소의 장을 지역치안협의회 당연직으로 추가 구성하여 우리구의 효과적인 범죄예방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인천보호관찰소장을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구성
  - 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에 당연직 위원 추가
 (안 제4조제3항)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 2. 20.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 남동구청/☎ 453-2312, FAX 453-23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4.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년월일 : 2019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보호관찰소의 장을 지역치안협의회 당연직으로 추가 구성하여 우리 구의 효과적인 범죄예방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에 인천보호관찰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안 제4조제3항)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공단소방서장”을 “인천공단소방서장, 인천보호관찰소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4조(협의회 구성) ①·② (생략)<br>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경찰서장,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천남동소방서장, <u>인천공단소방서장</u> 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br>1. ~ 4. (생략) | 제4조(협의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br>-----<br>-----<br>-----<br>-----<br>----- <u>인천</u><br><u>공단소방서장, 인천보호관찰소장</u> -----<br>-----<br>-----.<br>1. ~ 4. (현행과 같음) |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25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월 31일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논현경찰서장 및 공단소방서장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으로 추가 구성하여 협의회를 정비·보완하여 통합방위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논현경찰서장 및 공단소방서장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구성  
- 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에 당연직 위원 추가  
(안 제3조제2항제4호~제12호)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 2. 20.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 남동구청/☎ 453-2312, FAX 453-23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4.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년월일 : 2019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 제안이유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따라 협의회 구성을 정비·보완하여 통합 방위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협의회 구성 개정
  -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당연직 위원 추가  
(안 제3조제2항제4호~제12호)

### ☐ 본 문 : “별첨”

###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 참고자료

-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논현경찰서장

9. 공단소방서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생략)        |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br>같음)        |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br>자로 한다. | ② -----<br>-----.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 <u>&lt;신설&gt;</u>          | <u>4. 논현경찰서장</u>                  |
| 4. ~ 7. (생략)               | 5. ~ 8. (현행 제4호부터 제7<br>호까지와 같음)  |
| <u>&lt;신설&gt;</u>          | <u>9. 공단소방서장</u>                  |
| 8. ~ 10. (생략)              | 10. ~ 12. (현행 제8호부터 제10<br>호와 같음) |
| ③ ~ ⑤ (생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참고자료]

☐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중사태 및 병중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관서의 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지방소방관서의 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25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월 31일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2018. 8. 8.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재난관리부서 운영체계 변동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임무와 역할을 조정하여 위원회 구성과 재난관리행정조직의 괴리로 인한 기금 운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 직책 변경  
(안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제5항 1호)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 2. 20.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 남동구청/☎ 453-2312, FAX 453-23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4.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년월일 : 2019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2018. 8. 8.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재난관리부서 운영체계 변동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임무와 역할을 조정하여 위원회 구성과 재난관리행정조직의 괴리로 인한 기금 운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 직책 변경

| 구 분       | 현 행                              | 조 정 후                                      |
|-----------|----------------------------------|--------------------------------------------|
| 부 위 원 장   | 기획예산실장                           | 자치행정국장                                     |
| 당 연 직 위 원 | 3개 부서장<br>(안전총괄과장, 농축수산과장, 건설과장) | 4개부서장<br>(기획예산실장, 안전총괄과장,<br>농축수산과장, 건설과장) |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 제9조.

남동구 조례 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기획예산실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 행 | 개 | 정 | 안 |
|---|---|---|---|---|
|---|---|---|---|---|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④ (생략)

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안전총괄과장, 농축수산과장, 건설과장

2. (생략)

⑥ ~ ⑧ (생략)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자치행정국장-----.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1. ----- 기획예산실장,  
안전총괄과장-----

2.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 [참고자료]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안전총괄실)** (삭제 2018.08.08.)

**제9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안전총괄과, 문화관광체육과, 민원봉사과, 청소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26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1일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개정사항과 다양한 주민욕구 및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예산편성과정”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정비(안 제37조제1항 등)
-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로 정비(안 제40조 제3항 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에 “사업 모니터링 및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신고 활동”을 추가(안 제43조제2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안 제44조제1항)
- 예산학교 운영 등(안 제46조의2 신설)

####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060, FAX 453-205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http://www.namdong.go.kr/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년월일 : 2019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개정사항과 다양한 주민욕구 및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예산편성과정”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정비(안 제37조제1항 등)
-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로 정비(안 제40조제3항 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에 “사업 모니터링 및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신고 활동”을 추가(안 제43조제2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안 제44조제1항)
- 예산학교 운영 등(안 제46조의2 신설)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지방재정법 제39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 남동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예산편성과정”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장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예산편성”을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예산편성”을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지방예산편성”을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예산의 편성과정”을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 모니터링 및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신고 활동

제44조제1항 중 “19명 이내”를 “20명 이내”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예산학교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 주민참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예산학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47조제5호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37조(운영 원칙)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구 <u>예산편성과정</u> 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7조(운영 원칙) ① -----<br>----- <u>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장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u> -----<br>-----.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구의 <u>예산편성</u> 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br>----- <u>예산과정</u> -----<br>-----.                                           |
| 제40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u>예산편성</u> 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40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br>-- <u>예산과정</u> -----<br>-----<br>-----.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제2항의 사업공모 등은 각 동 <u>주민자치위원회</u> 에서 수행할 수 있다.                                                              | ③ ----- <u>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u> -----<br>-----.                                        |
| 제41조(의견제출) ① <u>지방예산편성</u> 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41조(의견제출) ① <u>예산과정</u> -----<br>-----<br>-----<br>-----<br>-----.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43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 제43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

기능) ① 구청장은 구 예산의 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2. (생략)

### <신 설>

3. (생략)

제4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성별·연령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위원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동장이 복수 추천하여 구청장이 1명을 위촉한다.

④ (생략)

제45조(운영 등)

① ~ ⑤ (생략)

### <신 설>

기능) ① ----- 예산과정-----  
-----  
-----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사업 모니터링 및 보조금 부정 수급 감시·신고 활동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44조(구성) ① -----  
-----20명 이내-----  
-----  
-----.

② (현행과 같음)

③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

④ (현행과 같음)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예산학교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전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 주민참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

제4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  
다.

1. ~ 4. (생략)

5.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직이 위  
촉 해제된 경우

하여 예산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  
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  
다.

③ 예산학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47조(위원의 위촉 해제)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  
치회 -----

## [관계 법령]

##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3., 2018. 3. 27.>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3. 27.>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3. 2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3., 2017. 7. 26., 2018. 3. 27.>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 3. 27.>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8. 3. 27.]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목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2항, 제3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예산편성의 방향 설정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요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
3. 제2항제3호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4. 그밖에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예산과정

제46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를 “제1항과 관련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공청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을 “서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사업공모·제안

제46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에 참여

제46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예산편성시”를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하는 주민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사업 제안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1.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안된 사업의 예산 반영 결과
2. 제2항 각호의 참여 방법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 및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토 결과
3. 주민참여예산기구의 회의록 등 운영 결과
4.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한 주민의견서
5. 기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 규모 등 재정적 여건과 인구 밀도, 고령화 정도 등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26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1일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공인 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공인의 비치사용 기관의 명확화 : (안 제2조제1항)
-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 (안 제3조제2항)
- 공인의 규격 정비 : (안 제4조제2항 별지)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 2. 21.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민원봉사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 남동구청 민원봉사과

☎ 453-2441, FAX 453-5691)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4.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년월일 : 2019년      월      일  
제 출 자 :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공인 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인의 비치사용 기관의 명확화 : (안 제2조제1항)
-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 (안 제3조제2항)
- 공인의 규격 정비 : (안 제4조제2항 별지)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33조~제40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제26조~제32조

## 남동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기관**”을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으로, “**규격·비치 및 그 밖의**”를 “**관리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소속 행정기관**”을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으로, “**장과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 의결·자문·합의제기관**”을 “**장 및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비치·사용하며, 무인민원발급기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를 “**가지고 사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 중 “**비치·사용**”을 각각 “**가지고 사용**”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일반공인을 전자입력하여**”를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재산관리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말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가**”를 “**가로**”로, “**한다**”를 “**하며,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새기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약칭으로 새기거나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전자이미지공인을**”을 “**전자이미지공인은**”으로, “**기관은**”을 “**기**”

관”로, “주관부서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문서업무 주관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고, 정보화 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를 “주관부서가 관리하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전자이미지공인 컴퓨터 파일은 정보화 담당부서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을 “그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을 각각 “전자이미지공인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인의”를 “공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공인을”을 “공인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을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폐기공인의 공인명”을 “폐기 공인의 이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공고기관”을 “공고 기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를 “용기”로, “공인보관자가 공인함을 봉인하여”를 “봉인하여”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그 문서를 시행(발행, 발급, 발신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시행기관장 명의의 끝자의 가운데에 날인하여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로, 같은 항 단서 중 “날인할”을 “찍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인 날인의”를 “공인의 인영”으로, “전자문서를 출력하여”를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로 한다.

제16조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별표1과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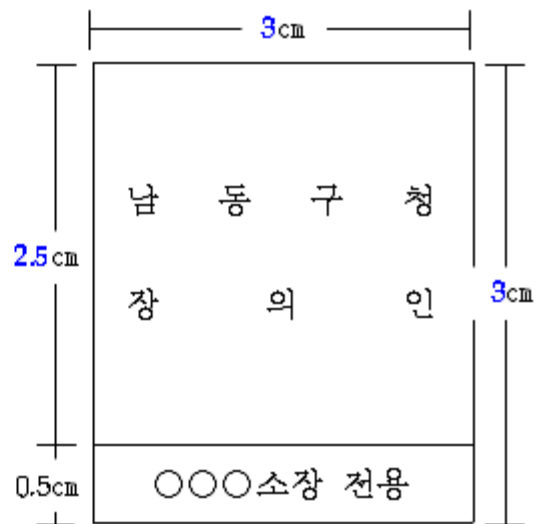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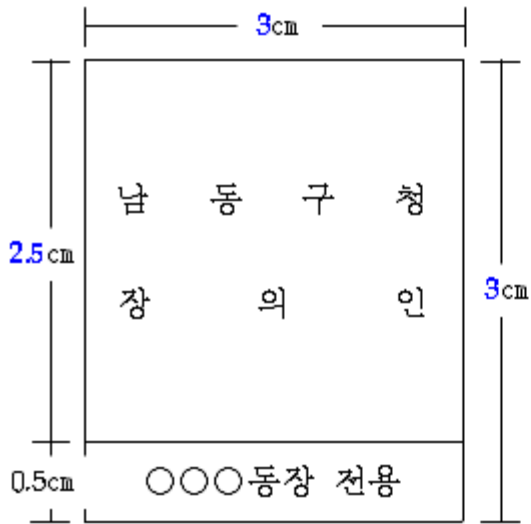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시·공고 문서,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의 각종 서식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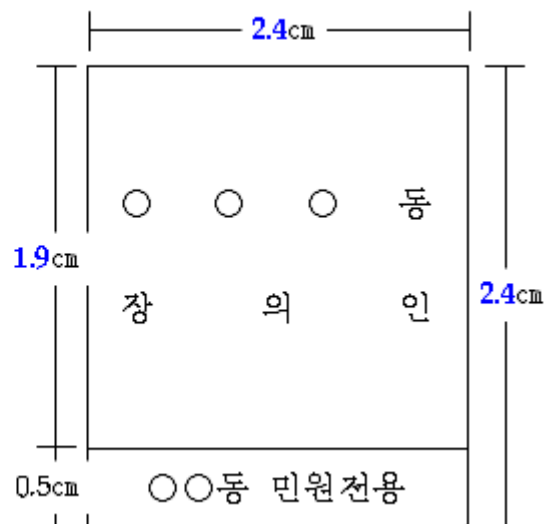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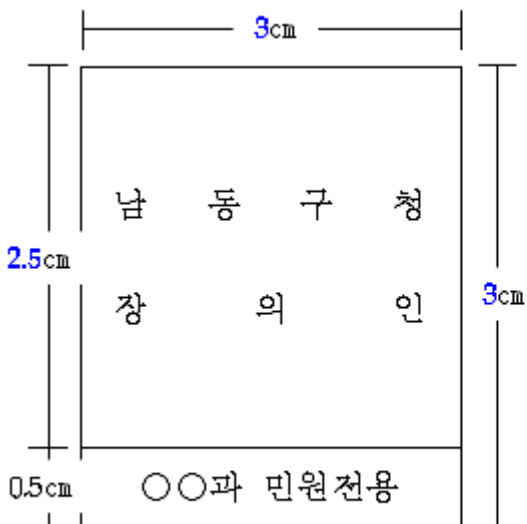
## [별표1]

## 공인의 비치·사용(제2조 관련)

## - 제2조제2항



## - 제2조제3항



## [별표2]

##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단위 : cm)

| 구 분    |                                   |                                                                                       | 한 변의 길이 | 비고 |
|--------|-----------------------------------|---------------------------------------------------------------------------------------|---------|----|
| 청<br>인 | 합의제기관<br>(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 |                                                                                       | 3.6     |    |
| 직<br>인 | 기<br>관<br>장<br>인                  | • 구청장                                                                                 | 3       |    |
|        |                                   | • 4급,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br>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 2.4     |    |
|        |                                   | • 6급, 7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br>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 1.8     |    |
|        | 회<br>계<br>관<br>계<br>직<br>인        | •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b>기금<br/>운용관</b> ,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br>부채관리관, 지출원과 그 대리인,<br>분임자의 직인 | 2.0     |    |
|        |                                   | • 출납원과 그 대리인, 분임자의 직인                                                                 | 1.8     |    |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및 그 소속 <u>행정기관</u> 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u>규격·비치 및 그 밖의</u>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br>-----<br>-----<br>--- <u>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u> ---<br>-- <u>관리에</u> -----<br>-----.                                                |
|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그 소속 <u>행정기관</u>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u>장과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 의결·자문·합의제기관</u> 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u>비치·사용하며, 무인민원발급기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u> | 제2조(공인의 비치 사용) ① -----<br>-----<br>--- <u>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u> --- <u>장 및 회계관계 공무원</u> -----<br>-----<br>----- <u>가지고</u><br><u>사용한다.</u> |
| ② 구청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u>비치·사용</u> 할 수 있다. 다만,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전용임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② -----<br>-----<br>-----<br>-----<br>----- <u>가지고 사용</u> -----<br>-----<br>-----<br>-----.                                                    |
| ③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의 처                                                                                                                                                | ③ -----<br>-----                                                                                                                               |

리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사  
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  
1과 같이 민원 전용임을 표시하여  
야 한다.

④ (생 략)

⑤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전  
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교부하는 민원서류에 사용하기 위  
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  
자이미지공인은 일반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  
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  
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  
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 분임자 등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을 말한다  
<신 설>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  
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 새기  
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가지고 사용  
-----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① -  
-----  
-----  
---기금운용관 -----  
-----  
-----  
-----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  
----- 가로-----  
-----  
----- 하며,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  
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 공  
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 ② (생 략)

제5조(공인의 각인)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는 관서명과 회계명을 새긴다.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업무 주관부서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문서업무 주관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고, 정보화 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한다.

② 구청장, 소속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서업무 주관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

직명을 새기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약칭으로 새기거나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은 -----  
---- 기관이 -----  
----- 주관부서가 관  
리하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  
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전자  
이미지공인 컴퓨터 파일은 정보화  
담당부서가 -----  
--.

② ----- 그 보조기관, 소속기관  
의 장 -----  
-----  
-----  
-----.

③ -----  
-----  
-----  
----- 전자이미지

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제10조(공고) ① 구청장은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구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③ 삭 제

제14조(공인의 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두어야 하며, 직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보관자가 공인함을 봉인하여 이중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공인대장-----  
-----  
-----  
----- 전자이미지공인대장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0조(공고) ① ----- 공인을 -----  
-----  
-----.

1. 공인의 -----  
-----
2. -----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 폐기 공인의 이름 -----
4. 공고 기관-----

(현행과 같음)

제14조(공인의 보관방법) -----  
----- 용기-----  
-----  
-----  
----- 봉인하여 -----  
-----.

제15조(공인의 날인 등) ① (생략)

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발행, 발급, 발신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시행기관장 명의의 끝자의 가운데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③ 공인 날인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규정)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공인의 날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

-----찍을-----.

③ 공인의 인영 -----  
----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  
-----.

제16조(준용규정) -----  
-----  
-----  
----- 따  
른다.

현행

개정안

(별표1)

(별표1)

|  |  |                                                          |  |
|--|--|----------------------------------------------------------|--|
|  |  | <p>공인의 비치·사용(제2조 관련)</p> <p>- 제2조제2항</p> <p>- 제2조제3항</p> |  |
|--|--|----------------------------------------------------------|--|

(별표2)

## 공인의 규격

| 구 분 |        | 한 변의 길이        | 비고 |
|-----|--------|----------------|----|
| 청인  | (생략)   |                |    |
| 직인  | 기관장인   | 2.4<br>2.1     |    |
|     | 회계관계직인 | 2.0<br><br>1.8 |    |

(별표2)

##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 구 분 |          | 한 변의 길이        | 비고 |
|-----|----------|----------------|----|
| 청인  | (현행과 같음) |                |    |
| 직인  | 기관장인     | 3<br>2.4       |    |
|     | 회계관계직인   | 2.0<br><br>1.8 |    |

## [참고자료]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① 제13조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찍는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관인의 날인(捺印)을 갈음하여 서명(전자문자서명과 행정전자서명은 제외한다)을 할 수도 있다.

② 제13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 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 간에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서명을 한다.

③ 관보나 신문 등에 실리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관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거나 알리는 문서에는 관인의 날인을 갈음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규격대로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인의 실제 규격보다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① 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인을 가진다.

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정부조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진다.

**제34조(특수 관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교육부장관이, 외교부와 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하는 관인은 외교부장관이, 검찰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법무부장관이, 군 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국방부장관이 각각 그 규격과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5조(규격)** 관인의 모양은 별표의 규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6조(등록)** ① 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그 행정기관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관인을 사용할 수 없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관인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① 행정기관이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행정기관에 갱신한 관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이 관인을 폐기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대장에 관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관인을 제39조에 따른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관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38조(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①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이라 한다)은 그 행정정보시스템에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기 위하여 그 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37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이 제37조에 따라 재등록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할 수 있다.

**제39조(공고)** 제36조에 따른 등록기관은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 관인의 규격(제35조 관련)

(단위: cm)

| 구분 |              | 길이  |
|----|--------------|-----|
| 청인 | 국무회의         | 5.4 |
|    | 그 밖의 합의제기관   | 3.6 |
| 직인 | 대통령          | 4.5 |
|    | 국무총리         | 3.6 |
|    |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 | 3   |

비고: 위 길이는 사각형인 경우에는 한 변의 최대 길이, 원 또는 다각형인 경우에는 최대 지름 또는 대각선으로 한다.

###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① 영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인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본·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찍을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서명하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 위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의 발신 명의에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서명 앞에 "직무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일일명령 등 단순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문서와 행정기관 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

무연락, 통보 등을 위한 문서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별표 1에 따른 관인생략이나 서명생략(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만 해당한다) 표시를 하고 관인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처리과의 장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미리 관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처리과의 장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관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한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26조(관인의 재료 등)** ① 관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직인의 사용)**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인은 그 직의 서리(署理)도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관인의 내용)**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영 제34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관인의 인면(관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 ① 행정기관(제3항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으로서 그 하급기관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별지 제7호서식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의 컴퓨터파일은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영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재등록 및 폐기)** ① 행정기관(제3항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으로서 그 하급기관으로부터 재등록신청 또는 폐기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은 영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갱신한 관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관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영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폐기하려는 전자이미지관인 또는 재등록하려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영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한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상급기관에 재등록신청을 하거나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전자이미지관인의 관리)**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 관리대장에 해당 관인의 인영을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공고의 내용)** 관인 등록기관이 영 제39조에 따라 관인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별지 제2호서식)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발생요인

- 행정기관명·공인 규격·글씨체 변경에 따른 공인 변경
  - 현재 남동구 행정기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로 표기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공인 총계 : 884개(구 325개, 동 559개)
    - ▷ 일반공인 : 602개, 부착용(통합,무인,인증기) : 282개
  - 예산액 : 45,886천원
    - ▷ 일반용 602개\*35,000원=21,070천원
    - ▷ 부착용 282개\*88,000원=24,816천원

작성자 :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장 조 한 석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270호

## 취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           |                                      |
|-----------|--------------------------------------|
| 성 명       | 최**호 외 4건                            |
| 주소 또는 거소  | 내역별첨                                 |
| 서 류 의 명 칭 | 2018년 11월 독촉 및 19년 1월 수시분<br>취득세 고지서 |
| 서 류 의 내 용 | 2018년 11월 독촉 및 19년 1월 수시분<br>취득세 고지서 |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이사”, “반송함장기방치” 및 “폐업” 등으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인 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납기 2019.1.31.을 2019.2.28.로 변경하여 공시하오니 납기 내 남동구청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취득세 2019년 2월 공시송달 내역

| 과세번호                   | 배달일자         | 수령인 | 미배달사유        | 등록자명 | 송달내용 | 접수 |
|------------------------|--------------|-----|--------------|------|------|----|
| 1015012019012560000660 | 201901221035 |     | 보관기간경과       |      |      | Y  |
| 1015012019012800001787 | 201901221035 |     | 보관기간경과       |      |      | Y  |
| 1015012019012550002386 | 201901221035 |     | 보관기간경과       |      |      | Y  |
| 1015012019012560001439 | 201901212000 |     | 보관기간 경과 후 반송 |      |      | Y  |
| 1015012019012581001366 | 201901221035 |     | 보관기간경과       |      |      | Y  |

##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공고 제2019-16호

##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소 폐쇄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3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명령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영업주의 사망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소 폐쇄 공고
2. 공고기간 : 2019. 1. 28. ~ 2019. 2. 11. (15일간)
3. 당 사 자

| 연번 | 업종        | 신고번호  | 업소명  | 영업주 | 소 재 지           | 비고 |
|----|-----------|-------|------|-----|-----------------|----|
| 1  | 일반<br>음식점 | 등록-17 | 근이식당 | 박○숙 |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111 |    |

4.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5. 행정처분일: 2019. 1. 28.
6. 처분사유 : 시설물 멸실
7.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
8. 고지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9.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안전팀  
(☎ 032-453-2638)

##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공고 제2019-17호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9. 02. 12.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9. 01. 28. ~ 2019. 02. 11.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 업종          | 신고<br>번호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원인 및<br>내 용   | 사업자등록<br>폐업(말소)일 | 비고<br>(말소예정일) |
|-------------|------------------|---------------|-----|-----------------------------|-----------------|------------------|---------------|
| 위탁급식<br>영 업 | 2013-<br>0199475 | 국제기계<br>위탁급식소 | 윤** | 남동동로 136<br>(고잔동, 99블록 1로트) | 사업자등록<br>폐업(말소) | 2016-11-2<br>8   | 2019-02-12    |

###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9. 02. 11.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3

2019년 1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9-16호

## 도시관리계획(소래어시장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소래어시장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2월 1일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168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소래어시장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부분(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변경)

3) 유통 및 공급시설(신설)

가) 시장(신설)

## ○ 시장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br>표시<br>번호 | 시설명 | 시설의<br>종류 | 위 치                             | 면적 (㎡) |             |       | 최초<br>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신설 | ①              | 시장  | 대규모<br>점포 | 인천광역시<br>남동구 논현동<br>111-168번지일원 | -      | 증)<br>4,303 | 4,303 | -         | 건폐율:80%이하<br>용적률:350%이하<br>층 수:3층이하 |

## ○ 시장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①      | 시장  | - 시장 신설<br>- 면적 : 4,303㎡ | -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br>위해 시장 신설 |

##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 및 구성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지형도면 :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9-17호

## 통·반 구역 조정 결정 고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구역 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 다 음 -

- 시 행 일 자 : 2019. 2. 1.부터 시행
- 통·반 구역 조정 내역 : “첨부문서 참조”

2019년 1월 3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첨부]

&lt;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gt;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구역 조정 계획**

- 간석4동 재건축 아파트 입주 및 과밀통 지역의 통·반 분할 조정
- 서창2동 신규 공동주택(아파트) 입주 예정지역의 통·반 분할 조정 실시

**I 관련 규정**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3조(획정기준)

반은 30내지 100세대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통은 2~8개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3조의2(통·반의 개편)

동장은 전출·입 등 변동사항에 따른 통·반의 세대수가 통·반의 획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1년 단위로 검토 조정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II 조정 기준

-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3조의 통·반 획정기준 적용
  - 반 : 30내지 100세대,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통 : 2~8개 반으로 구성,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정 가능

## III 조정 사유

### □ 간석4동

- 재건축 아파트(한산더휴 아파트 /643세대)입주 및 과밀통(520세대) 분통
  - 3개통 8개반 증가

### □ 서창2동

- 신규 공동주택(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1,212세대) 입주 예정에 따른 통반 구역 신설
  - 4개통 9개반 증가

## IV 조정 내역

### ○ 총괄현황

| 구 분   | 조 정 전 |       | 증 감 |      | 조 정 후 |       |
|-------|-------|-------|-----|------|-------|-------|
|       | 통     | 반     | 통   | 반    | 통     | 반     |
| 남 동 구 | 865   | 3,756 | + 7 | + 17 | 872   | 3,773 |
| 간석4동  | 42    | 207   | + 3 | + 8  | 45    | 215   |
| 서창2동  | 46    | 171   | + 4 | + 9  | 50    | 180   |

### ○ 조정내역

## - 간석4동 조정 내역

| 구 분  | 조정 대상<br>(현 행) |        | 조정 후 |        | 증(+), 감(-) |      | 비 고 |
|------|----------------|--------|------|--------|------------|------|-----|
| 합 계  | 2개통            | 9개반    | 3개통  | 8개반    | + 3통       | + 8반 |     |
| 간석4동 | 33통            | 4반     | 43통  | 1,2,3반 | + 2        | + 6  |     |
|      |                |        | 44통  | 1,2,3반 |            |      |     |
|      | 35통            | 3반(일부) | 45통  | 1반     | + 1        | + 1  |     |
|      |                | 4반     | 45통  | 2,3반   |            | + 2  |     |
|      |                |        | 35통  | 4반(폐지) |            | - 1  |     |

## - 서창2동 조정 내역

| 구 분  | 조정 대상<br>(현 행) |     | 조정 후 |        | 증(+), 감(-) |      | 비 고 |
|------|----------------|-----|------|--------|------------|------|-----|
| 합 계  | 1개통            | 1개반 | 4개통  | 9개반    | + 4통       | + 9반 |     |
| 서창2동 | 46통            | 1반  | 47통  | 1,2,3반 | + 4        | + 9  |     |
|      |                |     | 48통  | 1,2반   |            |      |     |
|      |                |     | 49통  | 1,2반   |            |      |     |
|      |                |     | 50통  | 1,2반   |            |      |     |

## 통 · 반 구역 조정 현황

▷ 승인 일자 :

2019.2.1.

| 구분<br>동명 | 현행  |       | 증감 |    | 조정후 |       | 비 고 |
|----------|-----|-------|----|----|-----|-------|-----|
|          | 통   | 반     | 통  | 반  | 통   | 반     |     |
| 계        | 865 | 3,756 | 7  | 17 | 872 | 3,773 |     |
| 구월1동     | 48  | 189   | 0  | 0  | 48  | 189   |     |
| 구월2동     | 49  | 211   | 0  | 0  | 49  | 211   |     |
| 구월3동     | 61  | 220   | 0  | 0  | 61  | 220   |     |
| 구월4동     | 36  | 171   | 0  | 0  | 36  | 171   |     |
| 간석1동     | 45  | 212   | 0  | 0  | 45  | 212   |     |
| 간석2동     | 36  | 160   | 0  | 0  | 36  | 160   |     |
| 간석3동     | 54  | 217   | 0  | 0  | 54  | 217   |     |
| 간석4동     | 42  | 207   | 3  | 8  | 45  | 215   |     |
| 만수1동     | 42  | 167   | 0  | 0  | 42  | 167   |     |
| 만수2동     | 40  | 159   | 0  | 0  | 40  | 159   |     |
| 만수3동     | 39  | 132   | 0  | 0  | 39  | 132   |     |
| 만수4동     | 43  | 211   | 0  | 0  | 43  | 211   |     |
| 만수5동     | 33  | 184   | 0  | 0  | 33  | 184   |     |
| 만수6동     | 41  | 185   | 0  | 0  | 41  | 185   |     |
| 장수서창동    | 32  | 121   | 0  | 0  | 32  | 121   |     |
| 서창2동     | 46  | 171   | 4  | 9  | 50  | 180   |     |
| 남촌도림동    | 44  | 193   | 0  | 0  | 44  | 193   |     |
| 논현1동     | 44  | 241   | 0  | 0  | 44  | 241   |     |
| 논현2동     | 46  | 215   | 0  | 0  | 46  | 215   |     |
| 논현고잔동    | 44  | 190   | 0  | 0  | 44  | 190   |     |

##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9-18호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0일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810외 5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28번길19외 3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br>고시일   | 도로명<br>부여사유 | 도로명주소<br>고시일 | 도로명주소<br>부여사유 | 비고 |
|--------------|-------|--------------|-------------|--------------|---------------|----|
| 별 도 열 람 (4건) |       |              |             |              |               |    |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br>폐지일 |             | 폐지 사유        | 비 고           |    |
| 별 도 열 람 (8건) |       |              |             |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남동구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조서

| 연<br>번 | 종전주소      |     |        | 도로명주소     |          |        | 도로<br>명고<br>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도로명주소<br>고시일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비<br>고 |
|--------|-----------|-----|--------|-----------|----------|--------|----------------|---------------------------------------------|--------------|-----------------------------------------------------|--------|
| 1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논현동 | 590-23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매소홀로     | 810    | 2009.07.06     | 백제, 고구려, 신라시대에 사용되었던 인천의 옛지명을 인용하여 제명       | 2019.01.30   |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매소홀로810기초구간에 위치하여 810을 건물번호로 부여       |        |
| 2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남촌동 | 617-7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함박외로     | 438-12 | 2009.07.06     | 함씨와 박씨가 많이 살던 함박마을이라는 마을이름의 함박산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 2019.01.30   |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함박외로438-12기초구간에 위치하여 438-12을 건물번호로 부여 |        |
| 3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구월동 | 1382-4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비류대로     | 804    | 2009.07.10     | 고구려의 시조 고주몽의 아들인 비류가 남하하여 세운 나라에서 이름에서 유래   | 2019.01.30   |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비류대로804기초구간에 위치하여 804을 건물번호로 부여       |        |
| 4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구월동 | 1341-4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석산로228번길 | 19     | 2009.11.16     | 석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 2019.01.30   |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산로228번길19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9을 건물번호로 부여     |        |
|        |           |     |        |           | 장승로      | Jan-75 | 2009.11.16     | 장승이 있었다는 옛 유래를 인용하여 제명                      | 2019.01.30   |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장승로75-1기초구간에 위치하여 75-1을 건물번호로 부여      | 연계부담지  |
| 5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고잔동 | 67-7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구월로60번길  | 5      | 2009.11.16     | 구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 2019.01.30   |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구월로60번길5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을 건물번호로 부여        |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 번호 | 종전주소      |     |          | 도로명주소     |          |      | 도로명주소<br>폐지일 | 폐지 사유        | 비고 |
|----|-----------|-----|----------|-----------|----------|------|--------------|--------------|----|
|    | 구분        | 동   | 지번       | 구분        | 도로명      | 지번   |              |              |    |
| 1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구월동 | 3-21,109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석산로228번길 | 19   | 2019.01.30   |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    |
| 2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만수동 | 579-6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장승로      | 75-1 | 2019.01.30   | 건물군 내 일부건물폐지 |    |
| 3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간석동 | 508-122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구월로60번길  | 5    | 2019.01.30   |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    |

##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9-19호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일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로 134외 30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br>폐지일 | 폐지 사유 | 비 고 |
|---------------|-------|--------------|-------|-----|
| 별 도 열 람 (31건) |       |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 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http://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 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 연<br>번 | 종전주소      |     |       | 도로명주소     |          |       | 도로명주소<br>폐지일 | 폐지 사유                                             | 비고 |
|--------|-----------|-----|-------|-----------|----------|-------|--------------|---------------------------------------------------|----|
| 1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간석동 | 1-728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만월로      | 134   | 2019.01.00.  | 2017.6.30.인천가죽공원 조성사업(2단계)<br>공사완료에 따른 편입부지 건물 폐지 |    |
| 2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간석동 | 1-728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만월로      | 138   | 2019.01.00.  | 2017.6.30.인천가죽공원 조성사업(2단계)<br>공사완료에 따른 편입부지 건물 폐지 |    |
| 3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간석동 | 산1-2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만월로      | 138-1 | 2019.01.00.  | 2017.6.30.인천가죽공원 조성사업(2단계)<br>공사완료에 따른 편입부지 건물 폐지 |    |
| 4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간석동 | 1-728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만월로      | 140   | 2019.01.00.  | 2017.6.30.인천가죽공원 조성사업(2단계)<br>공사완료에 따른 편입부지 건물 폐지 |    |
| 5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간석동 | 1-728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만월로      | 142   | 2019.01.00.  | 2017.6.30.인천가죽공원 조성사업(2단계)<br>공사완료에 따른 편입부지 건물 폐지 |    |
| 6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간석동 | 1-728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만월로      | 142-1 | 2019.01.00.  | 2017.6.30.인천가죽공원 조성사업(2단계)<br>공사완료에 따른 편입부지 건물 폐지 |    |
| 7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간석동 | 산1-2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만월로      | 142-2 | 2019.01.00.  | 2017.6.30.인천가죽공원 조성사업(2단계)<br>공사완료에 따른 편입부지 건물 폐지 |    |
| 8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간석동 | 1-728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만월로      | 144   | 2019.01.00.  | 2017.6.30.인천가죽공원 조성사업(2단계)<br>공사완료에 따른 편입부지 건물 폐지 |    |
| 9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간석동 | 1-728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만월로      | 146   | 2019.01.00.  | 2017.6.30.인천가죽공원 조성사업(2단계)<br>공사완료에 따른 편입부지 건물 폐지 |    |
| 10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간석동 | 산1-2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만월로136번길 | 4     | 2019.01.00.  | 2017.6.30.인천가죽공원 조성사업(2단계)<br>공사완료에 따른 편입부지 건물 폐지 |    |
| 11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간석동 | 산1-2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만월로136번길 | 4-6   | 2019.01.00.  | 2017.6.30.인천가죽공원 조성사업(2단계)<br>공사완료에 따른 편입부지 건물 폐지 |    |
| 12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간석동 | 산1-2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만월로136번길 | 4-8   | 2019.01.00.  | 2017.6.30.인천가죽공원 조성사업(2단계)<br>공사완료에 따른 편입부지 건물 폐지 |    |
| 13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간석동 | 산1-2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만월로136번길 | 4-10  | 2019.01.00.  | 2017.6.30.인천가죽공원 조성사업(2단계)<br>공사완료에 따른 편입부지 건물 폐지 |    |
| 14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간석동 | 산1-2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만월로136번길 | 4-12  | 2019.01.00.  | 2017.6.30.인천가죽공원 조성사업(2단계)<br>공사완료에 따른 편입부지 건물 폐지 |    |
| 15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간석동 | 산1-2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만월로136번길 | 6-4   | 2019.01.00.  | 2017.6.30.인천가죽공원 조성사업(2단계)<br>공사완료에 따른 편입부지 건물 폐지 |    |
| 16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간석동 | 산1-2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만월로136번길 | 6-6   | 2019.01.00.  | 2017.6.30.인천가죽공원 조성사업(2단계)<br>공사완료에 따른 편입부지 건물 폐지 |    |

|    |           |     |       |           |          |       |             |                                                    |  |
|----|-----------|-----|-------|-----------|----------|-------|-------------|----------------------------------------------------|--|
| 17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간석동 | 산1-2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만월로136번길 | 8     | 2019.01.00. | 2017.6.30.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2단계)<br>공사완료에 따른 편입부지 건물 폐지  |  |
| 18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간석동 | 산1-2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만월로136번길 | 10    | 2019.01.00. | 2017.6.30.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2단계)<br>공사완료에 따른 편입부지 건물 폐지  |  |
| 19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간석동 | 산1-2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만월로136번길 | 13    | 2019.01.00. | 2017.6.30.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2단계)<br>공사완료에 따른 편입부지 건물 폐지  |  |
| 20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간석동 | 산1-2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만월로136번길 | 14    | 2019.01.00. | 2017.6.30.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2단계)<br>공사완료에 따른 편입부지 건물 폐지  |  |
| 21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간석동 | 산1-2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만월로136번길 | 15    | 2019.01.00. | 2017.6.30.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2단계)<br>공사완료에 따른 편입부지 건물 폐지  |  |
| 22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간석동 | 산1-2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만월로136번길 | 16    | 2019.01.00. | 2017.6.30.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2단계)<br>공사완료에 따른 편입부지 건물 폐지  |  |
| 23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간석동 | 산1-2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만월로136번길 | 16-8  | 2019.01.00. | 2017.6.30.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2단계)<br>공사완료에 따른 편입부지 건물 폐지  |  |
| 24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간석동 | 산1-2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만월로136번길 | 16-12 | 2019.01.00. | 2017.6.30.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2단계)<br>공사완료에 따른 편입부지 건물 폐지  |  |
| 25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간석동 | 산1-2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만월로136번길 | 16-14 | 2019.01.00. | 2017.6.30.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2단계)<br>공사완료에 따른 편입부지 건물 폐지  |  |
| 26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간석동 | 산1-2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만월로136번길 | 16-16 | 2019.01.00. | 2017.6.30.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2단계)<br>공사완료에 따른 편입부지 건물 폐지  |  |
| 27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간석동 | 산1-2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만월로136번길 | 16-18 | 2019.01.00. | 2017.6.30.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2단계)<br>공사완료에 따른 편입부지 건물 폐지  |  |
| 28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간석동 | 산1-2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만월로136번길 | 21    | 2019.01.00. | 2017.6.30.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2단계)<br>공사완료에 따른 편입부지 건물 폐지  |  |
| 29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간석동 | 1-734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평온로      | 34-1  | 2019.01.00. | 2017.6.30.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2단계)<br>공사완료에 따른 편입부지 건물 폐지  |  |
| 30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도림동 | 112-1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논고개로     | 392   | 2019.01.00  | 2017.7.3.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장공사 실시계획(변경)<br>인가에 따른 건물 폐지 |  |
| 31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도림동 | 30-22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논고개로     | 415   | 2019.01.00  | 2017.7.3.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장공사 실시계획(변경)<br>인가에 따른 건물 폐지 |  |